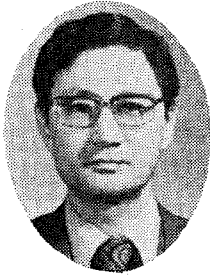


프랑스의 工業所有權制度



金 石 中
〈特許局 抗告審判官〉

1. 制度改正의 背景과 特徵

프랑스의 特許制度는 1971년에 확립된 이래 無審査制度를 채용하여 오다가 社會·經濟狀況의 變遷으로 1844년에 전통적인 自由認可制에 根本을 두어 전면 개정되었는 바 이 당시의 특허제도는 發明者 또는 申請人(出願人)이 번잡하고 비싼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政府機關에서도 막대한 資料와 많은 審査官이 필요없이 公報掲載가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特許明細書에 特許請求 범위가 없이 要旨(Résumé)의 記載만으로 용인되거나 異議申請制度가 없어 第三者 또는 外國과의 繫爭問題가 해결되지 않는 繁雜性, 산업발전에서의 여러가지 沮害要因이 많은 단점이 드러남으로써 125년 동안 전통적으로 실시해 오던 特許法은 1969년 1월부터 出願의 早期公開制度(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된 것), 意見通知書 作成制度(新規性調査報告書制度), 實用新案制度의 導入으로 명세서에 특허청구 범위를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特許制度가 시행되고 있다.

1969년 이전의 舊特許制度를 概說하면 출원 후 8~9개월 또는 12개월(出願時의 公開延期請求가 있는 것)에 無審査로서 特許가 許與되고 1~2개월 후에 그 書誌의 事項과 抄錄이 公報로 발행됨과 동시에 出願書類가 特許廳에 공개되었으며 公報發行日로부터 4개월 후에 全內容이 인쇄된 特許

明細書가 발행된다.

그리고 1960년 6월부터 醫藥에 대하여서도 특허를 許與하였는데 새로운 治療法에 대한 그의 應用을 權利로서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醫藥特別特許라고 칭하여 오다가 새 特許法에 흡수되었다.

한편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特許法은 西獨의 新規性 調査制度, 네덜란드의 豫備審査制度和 비슷한 신규성 조사보고서(일명 意見通知書)제도를 채용, 특허가 許與될 때까지 의견통지서가 3회 작성되어 매번 출원인에 通知하여 答辯書, 訂正書의 提出이 反復되며 第2회제의 통지에 의하여 2개월이 경과되면 出願公告가 되고 이에 따라 제3자에 의한 異議申請制度가 適用되어 3회제에 最終報告書가 확정됨으로써 特許가 容認된 경우에 특허권이 부여되며 아울러 공고되는 특징이 있다.

2. 特許出願 및 審査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69년부터 새로이 改正, 施行되고 있는 현행 特許制度는 出願인이 特許를 신청하여 우리나라 및 日本과 같이 審査官이 新規性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意見通知書와 出願인의 答辯書, 또는 訂正書, 그리고 第三者의 異議申請이 反復되는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가 許與되고 있으며 그 내용과 節次는 다음과 같다.

(1) 出願의 公開

出願日(優先權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는 第1國에의 出願日)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출원은 공개되고 出願書類는 特許廳에서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書誌的 事項이 抄錄과 함께 公報가 綠色紙로 印刷發表되고 아울러 特許明細書가 발행된다.

出願人의 請求가 있으면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을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發明의 技術의 內容에 대하여 新規性 및 進歩性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出願公開로부터 出願公告期間이 경과될 때까지는 第3者가 그 發明의 新規性이나 進歩性에 관하여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頒布刊行物에 의한 신규성 조사는 國際主義를 택하고 있다.

(2) 意見通知書制度

이 제도는 일명 新規性 調查報告書制度라고도 하며 特許廳長은 그 出願이

- ① 方式에 適合한가
- ② 1發明 1出願의 要件(多發明의 경우에는 分割의 여부)에 충족하고 있는가
- ③ 分割出願인 경우 原出願明細書에 없던 事項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가
- ④ 公序良俗에 위반되지 않는가
- ⑤ 産業上 이용될 수 있는 發明인가
- ⑥ 컴퓨터의 Programing과 같은 抽象的인 內容의 것이 아닌가
- ⑦ 明細書 內容이 意見通知書를 작성하기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確認하여 그 內容들을 審査되 위 여러가지 要件의 어느 것이나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그 출원은 拒絕된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에는 그 發明의 新規性이나 進歩性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國際特許協會(IIB, Institute International des Brevets)에 위탁하고 의견통지서를 작성한다.

특허청으로부터의 의견통지서는 3회를 작성하는데 제1~2회는 우리나라의 補正命令 또는 拒絕理由와 비슷한 것이며 제3회는 特許査定通知書와 같은 것이다.

의견통지서의 작성은 출원의 公開와는 관계없이 특허청장이 작성하지만 공개된 후에는 제3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의견통지서의 작성을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다.

출원인은 醫藥品을 대상으로 하는 출원을 제외하고는 의견통지서 작성을 出願日로부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特許權을 보다 빨리 얻기 위해서는 期間 중 適期에 그 연기를 撤回하고 의견통지서 작성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에 의견통지서 작성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特許出願은 職權으로 實用新案으로 변경되어 技術內容에 따라서 無審査로 實用新案의 권리가 부여된다.

제1회의 의견통지서가 작성되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2개월 기간을 指定코 答辯書의 제출, 特許請求範圍 등을 訂正할 수 있는 기회가 출원인에게 주어지며 이와 같은 書類의 提出與否는 출원인의 자유로 되어 있다.

제1회의 의견통지서에 대한 指定期間이 경과된 후에는 특허청장은 제1회의 의견통지서를 그대로 維持하든가 이것에 修正을 가하여 제2회의 의견통지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通知하고 2개월 이내에 다시 답변서나 訂正書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하여 再機會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출원은 公告된다. 出願公告는 이미 공개된 출원에 대해서는 공보에 발표하고 未公開의 출원은 출원내용을 인쇄하여 발표하되 公報에도 기재한다.

公告日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는 제2회의 의견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異議申請에 의한 公衆審査制度和 같은 것이다. 제3자로부터 意見(異議)이 제출되면 이것을 출원인에 통지하여 2개월의 指定期間 이내에 答辯書나 訂正書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節次가 끝나면 특허청장은 最終的으로 제3회의 의견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출원에 대한 特許를 許與하게 된다. 이 특허의 權利는 最終意見書가 붙게 된다.

이상과 같은 意見通知書 作成制度는 우리나라와 같은 審査國에서의 심사와 같이 審査官이 발명의 新規性 등을 심사하여 출원을 拒絕하거나

또는 특허를 허여하는 제도는 아닐지라도 이 제도를 採用함으로써 1969년 이전의 舊制度和 같은 無審査만으로 특허를 내주어 실제로 그 권리의 有效與否를 侵害訴訟으로 가름하지 않으면 아니될 盲點을 解消시키고 있다.

즉 發明의 新規性이나 進歩性에 관한 제3자의 의견을 가하여 조사하고 이것을 출원인에게 알려 그로부터 의견을 들어 조사한 公知技術이 포함되지 않도록 그 特許請求範圍를 訂正하는 기회를 주어 이것을 다시 綜合檢討한 후 최종의 結論지서를 작성하여 이것을 權利解釋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권리해석이 모호하였던 舊制度보다는 큰 變革을 가져온 것이다.

(3) 實用新案制度

1969년부터 새로이 導入實施되고 있는 制度로서 意見通知書制度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意見通知書(調查報告書) 作成節次를 거쳐 無審査로 實用新案權利를 취득할 수가 있다. 다만 權利의 存續期間은 출원일부터 6년이며 特許權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인 데 비하면 대단히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의 實用新案의 對象範圍은 우리나라와 같이 物質의 形狀 構造의 組合에 한정시키지 않고 醫藥을 제외하면 特許와 동일한 점이 많다.

發明者는 처음부터 實用新案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또한 특허를 출원하여 意見通知書作成을 請求하지 않을 경우 그 特許出願은 자동 實用新案으로 변경된다.

3. 特許公報 및 明細書

特許審査 과정에서 出願인이 第1次 答辯書 및 訂正書를 제출하는 기간이 지나면 出願公告를 하며 이미 공개된 출원에 대하여 工業所有權公報(Bulletin Offici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에 掲載, 發表하여 公告日로부터 3개월 이내에 第3者는 第2意見通知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이른바 公衆審査制度(또는 異議申請制度)를 運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된 출원을 게재하는 공보는 每週 발행되되 여기에는 特許, 追加特許, 實用新案을 포함하여 國際特許分類의 8개 부문으로 나누어 販賣되고 있다.

舊法에 있어서는 출원 후 약 1개월이 되면 特許된 發明의 抄錄이 書誌의 事項과 같이 게재되어 각 부문별로 복잡한 複數의 分類나 番號順으로 되어 있었으나 1969년부터의 新法에는 出願日(또는 優先權主張日)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면 出願明細書가 공개되고 아울러 工業所有權公報에 게재되어 왔으며 그해 12월부터는 新法에 의한 公開特許를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公報는 다음에 기술한 것과 같이 2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① 第1部(舊法): 장차 消滅될 것이나 현재 白色紙에 一般特許와 追加特許가 게재되어 있으며 特許番號는 190萬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開發特許 分類順으로 특허번호, 출원번호 출원일, 국제특허분류발명의 名稱, 출원인, 代理人, 優先權主張 등의 書誌의 事項과 함께 抄錄, 圖面이 1페이지에 4건씩 게재되어 있다.

② 第2部(新法): 綠色紙에 게재되고 있으며 新法의 특허번호는 200萬대부터 시작된다. 掲載順序 및 事項은 제1부(舊法)와 마찬가지로 특허번호 대신에 公開番號가 기재되어 있다.

③ 第3部(新法으로 公開되지 않고 權利가 賦與된部): 白色紙에 인쇄되어 1970년 7월 31일부터 게재된 것으로서 게재순서 및 사항은 제2부와 같으며 권리가 부여된 것이나 未審査分類의 대부분과 예외적으로 公開 전에 권리가 부여된 것들이다.

이밖에 特許明細書가 있는 바 1969년 1월부터 新法에는 出願日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출원이 공개되어 동시에 1次資料로서 特許明細書(Brevet d'Invention)가 印刷發行되고 있다. 同明細書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두 가지가 있으며 그 形態도 거의 동일한 데다 番號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밖에 追加特許明細書(Addition au Brevet d'Invention)와 醫藥特別特許明細書(Brevets Spéciaux de Medicaments)가 있다.